

11.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33號 1996. 2. 10

1. 개정이유

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가 1996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을 단축함.

- 기술사,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,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, 기능장, 기능사 1·2급, 기능사·기능사보, 특급기술자 : 1주 이상
-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미만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,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미만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,

고급기술자, 중급기술자 : 2주이상

나.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기한을 연장함.

-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 : 1996년 6월 30일까지
- 학력·경력자 : 1996년 9월 30일까지
-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: 1996년 12월 31일까지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 : 건설기술심의관실 기술정책과, 50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) 및 주소